

법인세율의 변화가 기업의 적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운오(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wjung@snu.ac.kr)

박찬웅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부 조교수
(accpark@khu.ac.kr)

박종일(교신저자)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parkjil@chungbuk.ac.kr)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적대비지출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모형에서 도출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적대비지출액이 세법에 규정된 손금산입 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은 세율의 변화가 적대비지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즉, 조세중립성이 성립됨). 반면, 최적적대비지출액이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은 세율 변화에 따라 최적적대비지출액이 영향을 받는데(즉, 조세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음), 특히 세율이 인하되면 한도초과 적대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어 조세비용이 감소하므로 최적적대비지출액은 증가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등 두 유형의 기업에 대해 세율이 인하된 2002년 및 2005년과 그 직전 연도인 2001년 및 2004년을 대상으로 적대비지출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도초과기업은 세율인하연도에서 직전연도에 비해 적대비지출액이 더 증가하여 이론적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2002년의 적대비지출액은 2001년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론적 결과와 일치 하였으나, 2005년의 적대비지출액은 2004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이론적 결과와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도미달기업의 2005년도 적대비 증가현상을 기업의사결정의 전략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세율인하기간에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적대비지출액이 더 많았던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세율이 1% 포인트 하락한 2002년과 2% 포인트 하락한 2005년도 각각에서도 매우 강하게 관찰됨으로써 세율인하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도미달기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실증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2002년에 한도미달기업은 한도초과기업처럼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적대비증가율도 높았던 경향을 보였지만, 2005년에는 오히려 매출액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서 적대비증가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세율인하에 대응한 적대비 의사결정은 한도초과기업에서 더 일관되게 관찰된 셈인데, 이는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최적적대비가 세율과 중립적이지만,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적대비는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적대비, 적대비한도, 법인세율인하, 세무전략

1. 서론

최근 2002년과 2005년에 걸쳐 법인세율이 각각

1% 포인트와 2% 포인트가 인하되었는데, 그 목
적은 외환위기 이후 부진했던 기업의 투자를 촉진
하고 조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함이었
다. 법인세율의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중

논문접수일: 2007. 8 게재확정일: 2008. 1

* 위 논문의 이전 version에 대해 한국회계학회 2007년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좋은 제언을 주신 심충진(전국대), 최원욱(연세대), 전규안(숭실대)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제언을 해 주신 두 익명의 심사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경영연구소의 2006년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감소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적으로는 세율인하에 대처한 기업의 전략적 반응과 그 경제적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세율인하에 대한 기업의 다양한 전략적 반응 가운데 접대비지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접대비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유인은 매출의 증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지출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과소비, 사치향락, 부정부패 등과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를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에 따라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여 매출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에게 접대비 한도규정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세율인하라는 조세정책이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규정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접대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으로써 세율인하정책의 이차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의의 이외에도 본 연구는 기업의 최적접대비지출액에 대해 엄격한 분석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접대비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진작한다는 목적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세율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론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론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세법에서 규정한 손금

산입 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이하 '한도미달기업')은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다시 말해,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이 성립됨), 세율의 변화가 접대비지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세법상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이하 '한도초과기업')은 세율 변화에 따라 최적접대비지출액이 변동하는데(즉, 조세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음), 특히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한도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므로(다시 말해, 조세비용이 감소하므로) 최적접대비지출액은 증가한다.

이어서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가 접대비지출액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최근에 세율이 인하된 2002년 및 2005년과 그 직전연도인 2001년 및 2004년을 대상으로 접대비지출액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도초과기업은 세율인하연도(2002년 및 2005년)에서 직전연도(2001년 및 2004년)에 비해 접대비지출액이 더 증가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론적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1% 포인트의 세율이 인하된 2002년의 접대비지출액은 2001년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론적 결과를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얻었으나, 2% 포인트의 세율이 인하된 2005년의 접대비지출액은 2004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이론적 결과와는 다른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한도미달기업의 2005년도 접대비 증가는 기업의사결정의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세율이 인하되면 한도초과기업들은 한도초과 접대비에 대한 조세비용이 감소되므로 접대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한도초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이로 인한 시장점

유율의 제고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한도미달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하락을 용인하는 것이 기업이익의 극대화에 맞지 않는다면 한도미달기업들도 한도초과기업들처럼 접대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율인하로 촉발된 한도초과기업의 접대비 증가가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 증가까지 유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전략적 대응을 통한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 증가가 2002년에는 유의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2005년에만 관찰된 사실은 설명이 어렵다. 다만 2005년의 세율인하 크기가 2002년의 두 배에 해당하므로 한도초과기업들의 접대비 증가액도 2005년이 더 컸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 증가를 촉발할 가능성도 2005년이 더 높았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론분석에서 다루지 않은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접대비지출로 인해 기업이 얻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도초과기업이 세율인하에 반응하여 접대비를 증가시킬 때 매출성장성이 높았던 기업에서 그 증가율도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예상대로, 매출성장성이 높았던 한도초과기업은 그렇지 않은 한도초과기업에 비해 세율이 인하된 각 연도에서 접대비증가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도미달기업에 대해서는 일관된 실증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즉, 2002년 세율이 인하될 때 한도미달기업은 매출액 성장성이 높았던 기업에서 접대비증가율도 더 높았지만, 2005년 세율인하에서는 오히려 매출액 성장성이 낮았던 기업에서 접대비증가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세율인하에 대응한 접대비 의사결정은 한도초과기업에서 더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이는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최적

접대비가 세율과 중립적이지만,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접대비는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기업의 접대비지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제III장에서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접대비지출액, 즉 최적접대비지출액을 이론적으로 도출한 후, 이러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접대비의 법정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의 변화에 접대비지출액이 영향을 받는 반면 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은 법인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준다. 제IV장에서는 가설검정에 필요한 실증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에 이용될 대상기간과 표본기업의 선정과정을 논의한다. 제V장에서는 실증결과와 해석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VI장은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접대비 관련 세무회계 연구는 그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관심도에 비해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접대비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들을 주제별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검토한다.

먼저, 접대비규정이 조세공평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오기수(2001)가 있는데, 이 연구는 접대비 계산기준의 변경이 실제로 조세공평성을 증가시켰는지를 조사하였다. 1995년 이전 접대비 계산기준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손금한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단일틀이었으나, 1996년에 3단계 차등율로 개정되어 매출액 증가에 대한 손금한도비율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오기수(2001)는 상장법인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다섯 집단으로 나누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각 연도별 매출액 당 접대비와 접대비 손금불산입률을 비교한 결과, 1995년에 비해 1996년과 1997년의 규모별 손금불산입률 차이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수직적 공평성이 개선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접대비 규정이나 기업내외의 요인이 접대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홍정화와 이태호(2004), 이태호 등(2005) 및 유희경 등(2006)이 있다. 이태호 등(2005)은 접대비당 매출액을 접대비생산성으로 정의하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법인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한도 개정 및 IMF 외환위기가 기업의 접대비생산성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도규정이 확대되는 기간(1993~1995년)보다 축소되는 기간(1996~2000년)에서 그리고 한도규정이 확대되는 기간(1993~1997년)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1998~2002년)에서 접대비생산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모두 성립하였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세법개정에 따른 접대비생산성의 차이가 컸다. 또한, 홍정화와 이태호(2004)에서는 이태호 등(2005)과 동일기간·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접대비생산성이 높고,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접대비생산성이 높음을 실증하였다. 이밖에도

유희경 등(2006)은 관광호텔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생산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접대비 한도규정 변경에 대응한 기업전략을 분석한 연구로는 오기수(2000, 2002) 및 정운오 등(2007)이 있다. 오기수(2000)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 한도액이 확대된 1994년과 축소된 1996년 및 1997년의 매출액 당 접대비를 각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차이검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접대비 한도액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이 접대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법개정이 납세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합리적 납세자는 세법개정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오기수(2002)는 접대비 한도 개정에 따라 기업이 접대비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복리후생비의 변화를 유도하는지 조사하였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변동률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접대비가 증가할 때는 복리후생비는 감소하고, 접대비가 감소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¹⁾ 한편, 정운오 등(2007)은 오기수(2002)의 연구를 확장하여 기업들이 한도초과된 접대비를 정직하게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하는 대신에 손금산입이 자유로운 다른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절감을 도모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이 강화되었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에 상당수의 한도초과기업이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 복리후생비 또는 기

1) 손원익(1997)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접대비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손금한도액 이하의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적으로는 성격이 불분명한 접대비 경비가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등 접대비 이외의 항목으로 손금한도액에 제한없이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p.19 참조).

타판관비로 분류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최원욱 등(2005)은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성 여부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법인세법의 규제 논리대로 과소비와 부정부패 등 불건전한 지출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면, 한도에 미달하는 접대비 혹은 정상적으로 발생한 판관비에 비해 그 업무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기업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접대비 총액이 수익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접대비 한도초과기업의 경우는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접대비는 다른 판관비에 비해서 수익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태화 등(2006)은 기업특성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정책상 과다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세법상 한도가 규정된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의 한도초과액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보고, 이런 한도초과액이 대주주 지분을 및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여부, 사외이사비율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장기업에 대해 실증분석한 결과,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여부는 양(+)의 관련성을, 사외이사비율과는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윤태화 등(2006)은 재벌집단에 속한 기업일수록 접대비를 과다 지출하는 경향이 있고, 사외이사는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밖에 접대비 관련 세법규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손원익(1997, 2003) 및 박기백과 손원익(2003)이 있다. 박기백과 손원익(2003)

은 접대비에 대한 조세의 영향을 기업간 접대비지출의 경쟁적 요소를 반영하는 Cournot-Nash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다른 기업의 접대비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접대비를 도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분석적 결과를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상장·등록·외감법인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적 결과에서 예측한 대로 접대비 한도가 크면 접대비지출도 증가한다는 실증결과를 보임으로써, 이 연구는 접대비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접대비 한도를 낮출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손원익(2003)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법인 자료를 사용하여 세법개정에 따른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축소가 접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손금산입한도 증가율과 접대비 증가율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보임으로써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축소에 따라 접대비지출액도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접대비관련 연구인 손원익(1997)은 접대비 손금인정한도 적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비서비스업과 접대비지출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법상 규제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둔 접대비 관련 세법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법인세율 변동이 접대비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특히, 손원익(2003)은 접대비한도액에 관한 세법개편으로 인한 손금산입한도의 축소가 접대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데 반해,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접대비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박기백과 손원익(2003)에서도 법인세율과 접대비의 관

계를 분석한 바 있으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닌 주변적 주제로만 다루어졌고, 특히 본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율이 변화할 때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간에 최적 접대비지출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III. 최적접대비지출액의 분석

3.1 기본가정 및 모형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함수는 이익의 극대화를 전제하므로, 본 논문에서도 기업의 최적접대비지출액은 세후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금액으로 정의한다. 분석을 위해 접대비지출액을 E 로, '접대비 차감전 세전이익'을 $S(E)$ 로 나타내면, 과세표준은 $[S(E)-E]$ 로 나타낼 수 있다.²⁾ 여기서 접대비지출액의 수익관련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있으므로(박기백과 손원익 2003; 최원욱 등 2005), S 는 접대비 E 가 늘어날수록 증가한다고 간주한다(즉, $S'(E) > 0$). 반면, 접대비가 매출 증대에 한계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는 체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S''(E) < 0$ 라고 가정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접대비의 손금산입에 한도가 있으며, 이 한도액은 매출액에 따라 증가하지만 손금인정비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감소한

다. 따라서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bar{E}(S)$ 로 표시할 때, $\bar{E}'(S) > 0$, $\bar{E}''(S) \leq 0$ 이 성립한다.³⁾ 또한 매출액 1원이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한도액 증가액은 1원보다 작으므로, $\bar{E}'(S) < 1$ 의 관계도 성립한다.

이러한 기본가정에 입각하여 가상적인 두 상황 즉, ①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에 전혀 제약이 없는 경우와, ②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하기 위한 기본모형을 제시한다. 이 두 극단의 상황은 추후 실제 세법규정에 근거하여 도출한 최적접대비지출액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벤치마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먼저,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에 전혀 제약이 없어 접대비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경우의 최적접대비지출액을 구해 보자. 법인세율을 t_c 로 표시하면, 기업의 세후이익 I 는 다음의 식(1)과 같아진다.

$$I = (1 - t_c)(S(E) - E) \quad \text{식(1)}$$

이 경우 최적접대비지출액(이를 E_d 라 함: 아래첨자는 deductible을 의미함)은 다음의 식(2)를 충족해야 한다.

$$\frac{\partial S}{\partial E} = 1 \quad \text{식(2)}$$

2) 여기서 $S(E)$ 는 접대비 이외의 모든 비용이 손금산입 된 후의 세전이익을 의미한다. 또 편의상 이월결손금공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사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항목은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익기업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가정의 현실성은 매우 높다.

3) 더 나아가 S 는 E 의 함수이므로 접대비한도액은 $\bar{E}(S(E))$ 이고,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frac{\partial \bar{E}}{\partial S} \frac{\partial S}{\partial E} > 0$$

식(2)의 최적조건에는 법인세율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즉, 법인세율의 변동이 기업의 최적접대비지출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이 보장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해 보자. 이 경우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 되므로, 과세표준은 $S(E)$ 가 되어 법인의 세후이익 I 는 다음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 (1 - t_c)S(E) - E \quad \text{식(3)}$$

이 경우 최적접대비지출액(이를 E_{nd} 라 함: 아래 첨자는 non-deductible을 의미함)은 다음 식(4)를 충족해야 한다.

$$\frac{\delta S}{\delta E} = \frac{1}{(1 - t_c)} \quad \text{식(4)}$$

이 최적조건은 법인세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경우는 조세중립성이 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세율이 상승하면 최적접대비지출액은 줄어드는데(즉, $\delta E_{nd} / \delta t_c < 0$), 이는 식(4)의 좌변인 $\delta S / \delta E$ 가 E 에 관해 감소함수이고(즉, $S''(E) < 0$), 우변은 세율 t_c 에 관하여 증가함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율이 상승하면 식(4)의 우변이 증가하고 이와 일치하는 $\delta S / \delta E$ 의 값을 결정하는 접대비지출액 E_{nd} 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직관(economic intuition)은 다음과 같다. 세율이 상승하면 세후이익은 감소하는데, 접대비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세율이 상승하여도 절세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세율상승은 접대비가 세후이익에 한계적으로 기여하는 정도, 즉 한계수

익(marginal revenue)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기업은 접대비지출을 줄이는 것이 최적이 된다.

한편, E_{nd} 는 E_d 보다 작다. 분석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delta S / \delta E$ 가 E 에 관해 감소함수이고, 아울러 식(4)의 우변($= 1 / (1 - t_c)$)이 식(2)의 우변($= 1$)보다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접대비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접대비 전액이 손금불산입 되는 경우 기업이 더 적은 접대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후자의 경우 접대비의 절세효과가 전무하므로 동일한 접대비의 한계 수익이 더 낮고, 이에 따라 기업은 접대비지출액을 더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3.2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규정 하에서의 최적접대비지출액 의사결정

앞 절의 두 벤치마크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손금산입에 일정 한도를 정함으로써 접대비의 일부만 손금산입해 주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수익·비용구조는 기업마다 다를 것이므로 세후이익을 극대화 하는 최적접대비 수준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은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손금산입 한도에 미달하는 반면, 다른 어떤 기업은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실제 최적접대비지출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3.2.1 최적접대비지출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기업의 세후이익은 다음 식(5)의 I_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전술한 접대비 전액이 한도 없이 손금산입 되는 경우의 세후이익인 식

(1)과 당연히 동일하다.

$$I_1 = (1 - t_c)(S(E) - E) \quad \text{식(5)}$$

따라서 I_1 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접대비지출액(이하 E_1^*)을 도출하기 위한 충분조건도 식(2)와 같다. 그러나 식(5)로부터 도출된 E_1^* 가 실제로 최적접대비지출액이 되기 위해서는 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E_1^* 는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 (이하 $\bar{E}_1 \equiv \bar{E}(S(E_1^*))$ 로 표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식(5)의 E_1^* 가 \bar{E}_1 보다 커서 한도를 초과한다면 E_1^* 는 해당 기업의 실제 최적접대비지출액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최적접대비지출액은 다음 두 번째 분석을 통해 구해야 한다.

3.2.2 최적접대비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한다면, 세후이익은 식(6)의 I_2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접대비가 전액 부인되는 경우의 식(3)과는 달리 한도초과 접대비만 손금불산입 되므로 과세표준은, 접대비한도를 \bar{E} 라고 할 때, $\{S(E) - \bar{E}\}$ 가 된다.

$$I_2 = S(E) - E - t_c(S(E) - \bar{E})$$

$$= (1 - t_c)(S(E) - E) - t_c D \quad \text{식(6)}$$

여기서 $D \equiv (E - \bar{E}) =$ 접대비 한도초과액

식(6)으로부터 최적접대비지출액(이하 E_2^*)은 다음 식(7)을 충족해야 한다.

$$\frac{\delta S}{\delta E} = \frac{1}{1 - t_c(1 - \delta \bar{E}/\delta S)} \quad \text{식(7)}$$

한도미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7)을 만족하는 E_2^* 가 실제 최적접대비지출액이 되려면 분석의 전제가 되는 한도초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⁴⁾ 즉, E_2^* 는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인 $\bar{E}_2 \equiv \bar{E}(S(E_2^*))$ 를 초과해야 한다.

만일 $E_2^* < \bar{E}_2$ 가 성립되어, 분석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E_2^* 도 실제 최적접대비지출액이 될 수 없다. 이처럼 E_1^* 와 E_2^* 모두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의 최적접대비지출액은 손금산입한도액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때의 손금산입한도액은 \bar{E}_2 보다는 크고 \bar{E}_1 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 된다.⁵⁾ 그러나 기업의 수익·비용구조상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E_1^* 가 한

4) 식(7)의 우변은 세법상 접대비 전액을 손금산입하는 식(2)의 우변인 1보다 크고, 접대비 전액이 손금부인되는 식(4)의 우변인 $1/(1-t_c)$ 보다 작으므로 E_2^* 는 E_d 보다 작고, E_{nd} 보다 크다 (즉, $E_{nd} < E_2^* < E_d$). 이는 물론 접대비한도 초과와 경우가 전액 손금산입과 전액 불산입의 중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 앞서 분석한대로 E_{nd} 가 E_d 보다 작은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 $E_2^* < E_1^*$ 및 $\bar{E}_2 < \bar{E}_1$ 가 성립한다. 이로부터 E_1^* 와 E_2^* 모두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E_2^* < \bar{E}_2 < \bar{E}_1 < E_1^*$ 가 성립하는 경우가 된다. 이 경우 기업은 한도초과와 한도미달의 모든 상황에서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실행가능하지 못하므로 경제적인 \bar{E}_2 나 \bar{E}_1 에서 접대비지출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 접대비지출액이 결정되면, 각주 3)의 관계로부터 접대비 한도액이 새로 결정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bar{E}_2 와 \bar{E}_1 사이의 어떤 손금산입한도액 수준에서 최적접대비지출액이 결정된다.

도(즉 \overline{E}_1)를 초과하는 큰 값이어야 하는 반면, E_2^* 는 한도(즉 \overline{E}_2)에 미달하는 작은 값이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E_1^* 와 E_2^* 의 격차가 매우 커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의 최적적대비지출액은 법정한도액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이 정확하게 손금산입한도액만큼의 적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3.3 법인세율의 변화가 최적적대비에 미치는 영향 및 실증가설의 도출

최적적대비지출액이 한도에 미달하는 기업(이하 한도미달기업)은 당해 기업의 수익·비용구조의 특성상 적대비생산성⁶⁾이 매우 높아서 세후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법정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대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최적적대비 결정조건인 식(2)를 보면, 세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즉, 조세중립성이 성립하므로), 법인세율이 변화하여도 최적적대비지출액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반면, 최적적대비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이하 한도초과기업)은 적대비생산성이 낮아서 세후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적대비를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최적적대비지출액은 세율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적대비 결정조

건인 식(7)을 보면, 좌변인 $\delta S / \delta E$ 가 적대비지출액(E)에 관해 감소함수이고 우변은 세율(t_c)에 관해 증가함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율이 상승하면 우변이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좌변도 증가하기 위해서는 적대비지출액이 감소해야 한다. 역으로, 세율이 인하되면 적대비지출액은 늘어나게 된다.⁷⁾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정리(theorem)와 같다.

정리: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인하(인상)되어도 최적적대비지출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적대비지출액은 증가(감소)한다.

이 정리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에는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법인세율의 인하만 있었으므로, 연구가설은 법인세율 인하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 위 정리를 직접적으로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적적대비지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과 미달하는 기업을 구분하여 표본으로 사용해야 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최적적대비지출액의 변동액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적적대비지출액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므로, 기업이 보고한 적대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최적' 적대비지출액이라는 용어 대신 '적대비지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6) 여기서 적대비생산성이란 적대비 1원당 매출액으로 정의한다(홍정화와 이태호 2004). 적대비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적대비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비해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대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 것이다.

7) 이러한 분석적 결과에 대한 직관은 3.1의 벤치마크 케이스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즉, 세율이 상승하면 세후이익은 감소하는 반면 이미 한도를 초과한 적대비는 절세효과가 전혀 없어서 적대비의 한계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대비를 줄이는 것이 최적이 된다. 반대로, 세율이 인하되면 세후이익이 늘어나므로 적대비의 절세효과가 없더라도 한계수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업은 적대비를 늘리는 것이 최적이 된다.

였으며, 연구가설에서도 최적점대비지출액 증가율의 대응(proxy) 변수로서 점대비지출액 증가율을 직전연도 대비 당해 연도 점대비지출액의 증가 비율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인
하된 연도(2002년과 2005년)의 점
대비지출액 증가율이 그 직전연도
(2001년과 2004년)에 비해 더 높다.

연구가설 2: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인
하된 연도(2002년과 2005년)와 그
직전연도(2001년과 2004년) 간의
점대비지출액 증가율은 차이가 없다.

연구가설 1에서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연도의 점대비지출액 증가율은 직전연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업의 점대비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적절히 통제된다면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에는 점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줄어들므로 인해 직전연도에 비해 점대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연구가설 2에서 점대비지출액 전액이 손금산입되는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직전연도의 점대비가 당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이었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법인세율이 인하되어도 점대비 수준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연도와 그 직전연도의 점대비지출액 증가율 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실증연구

부분에서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각각에 대해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와 그 직전연도의 점대비지출액 증가율을 함께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IV. 실증연구의 설계

4.1 법인세율 변동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꾸준히 인하되어 왔다.⁸⁾ 이에 따라 1996년부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6%, 1억원 초과는 28%의 세율이 한동안 적용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투자 부진과 경기침체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하여 2002년부터는 1%p 인하된 법인세율, 즉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말 세법개정에서도 법인세율이 2%p 추가 인하 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남아시아 등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 수준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다만, 감세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를 2004년이 아니라 1년이 유예된 2005년부터로 하였다. 따라서 현재 법인세율로서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 1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고 있다.

8) 1990년 이후 법정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1990년까지 방위세를 포함한 세율은 37.5%였으나 1991년부터는 방위세 폐지와 함께 법인세율은 34%로, 이후 1994, 1995, 1996년에는 각각 32%, 30%, 28%로 인하되었다.

〈표 1〉 법인세율 변동(1996년 이후)

개정 연도	시행 연도	법인세율	주민세(10%) 포함한 최고부담세율		비고
				인하율	
1995	1996~2001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8%	30.8%	-	
2001	2002~2004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29.7%	▽1.1%p	
2003	2005~현재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27.5%	▽2.2%p	1년 유예하여 '05년 이후 시행

한편, 기업의 실제 법인세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과 부가세(소득할주민세 10%)를 합한 세율을 알아야 한다. 다음 〈표 1〉에 제시된 대로, 최고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포함한 부담세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는 전년대비 1.1%p, 2005년에는 전년대비 2.2%p가 인하된 것을 알 수 있다.

4.2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설계

본 절에서는 전년대비 법인세율이 인하된 2002년과 2005년에 초점을 맞추어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적대비지출액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실증분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식(8)을 이용하여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begin{aligned}
 \Delta EE_t = & a_0 + b_1 YD_t + b_2 CHA_t + b_3 SL_t \\
 & + b_4 \Delta SALE_t + b_5 SIZE_t + b_6 LEVE_t \\
 & + b_7 INVC_t + b_8 CFO_t + b_9 LOSS_t \\
 & + b_{10} LARGE_t + b_{11} FOREN_t \\
 & + \Sigma IND + \varepsilon
 \end{aligned}$$

여기서,

종속변수

ΔEE_t = t년도 적대비 변동(=(적대비지출액_t-적대비지출액_{t-1})/적대비지출액_{t-1})

관심변수

YD_t = 법인세율 인하연도(2002년, 2005년)이면 1, 인하 직전연도(2001년, 2004년)이면 0

통제변수

CHA_t = t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1, 아니면 0

SL_t = t년도 중소기업에 속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Delta SALE_t$ = t년도 매출액 성장성
[(매출액_t-매출액_{t-1})/매출액_{t-1}]

$SIZE_t$ = t년도 기업규모(기초총자산에 자연로그 값)

$LEVE_t$ = t년도 부채비율(=총부채_t/총자산_t)

$INVC_t$ = t년도 전기 재고자산 증감률(=(재고자산_{t-1}-재고자산_{t-2})/재고자산_{t-2})

CFO_t = t년도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LOSS_t$ = t년도 당기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LARGE_t$ = t년도 대주주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

$FOREN_t$ = t년도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ΣIND = 산업더미

ε = 잔차항

i기업에 대한 아래첨자는 편의상 생략함

식(8)에서 종속변수인 접대비 변동(ΔEE)은 접대비지출액 증가율로서 t 기 접대비지출액에서 $t-1$ 기 접대비지출액을 차감한 후 이를 다시 $t-1$ 기 접대비지출액으로 나눈 값이다.⁹⁾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변수는 YD 더미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를 변동이 접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율인하연도와 직전연도의 접대비지출 변동을 비교하려 하므로,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2002년과 2005년)에 해당되면 $YD=1$, 세율인하 직전연도(2001년과 2004년)이면 $YD=0$ 으로 하였다. 따라서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가설이 성립한다면, 식(8)에서 b_1 의 값은 통계적으로 0과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b_1=0$), 반면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가설이 성립한다면 b_1 은 유의한 양(+)¹⁰⁾의 값을 가질 것이다($b_1>0$).

YD 이외에 접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통제변수를 제시하면, 먼저 기업규제환경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재벌기업여부(CHA), 중소기업여부(SL)를 포함하였고,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매출액 성장성($\Delta SALE$),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E$), 전기 채고자산증감률($INVC$)을, 수익성과 기업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영업현금흐름(CFO)과 당기손실발생여부($LOSS$)를, 그리고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LARGE$)과 외국인투자

자 지분율($FOREN$)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접대비지출에 대한 산업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산업더미($SIND$)를 모형식에 포함하였다. 대부분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것들이며, 그밖에 접대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다. 먼저 재벌기업여부(CHA)를 변수로 선택한 이유는 재벌기업에 소속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경제·사회적인 규제의 정도가 상이하고(예: 공정거래법 등) 지배주주의 영향력도 다르므로,¹⁰⁾ 재벌기업 소속여부는 접대비지출을 포함하는 기업경영활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윤태화 등(2006)은 재벌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경영권유지나 사적편의 위주의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접대비를 과다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예상대로 재벌기업여부와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양(+)¹¹⁾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윤태화 등(2006)에서의 종속변수는 접대비 한도초과액(수준변수)으로서 본 연구와 상이하지만, 이 관계가 매년 지속된다고 보면 한도초과기업의 경우에 b_2 의 값은 양(+)¹¹⁾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재벌기업이 경제·사회적인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해, 또는 외부주주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의 압력으로 인해 접대비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억제한다면 b_2 는 음(-)¹¹⁾의 값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CHA 와 ΔEE

9) 선행연구(오기수 2002; 정운오 등 2007)에서는 기업이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초과 접대비의 일정부분을 손금산입 가능한 다른 비용으로 분류하는 증거를 발견한 바 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 지출한 접대비와 접대비보고액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 지출한 접대비는 연구자가 관찰할 수 없으므로 접대비 관련 선행연구들은 모두 실제 접대비 대신 접대비보고액을 사용하였다(오기수 2002; 손원익 2003; 박기백과 손원익 2003; 홍정화와 이태호 2004; 이태호 등 2005; 최원욱 등 2005; 정운오 등 2007 등).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접대비지출액은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에 보고된 접대비를 합제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최원욱 등 2005).

10)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계열사간 출자관계를 통해 그룹(기업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각 그룹을 지배하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강형철 등 2006).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분관계로 인해 지배주주인 가족은 소규모의 자본만을 이용하여 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데, 이러한 특성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접대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1)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발표하고, 각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를 공시한다. 본 연구는 이 자료원에 따라 재벌여부를 구분하였다.

의 관계는 사전적으로 예측이 어렵다. 이어서, 중소기업여부(*SL*)를 통제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혜택을 누리며, 규제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접대비한도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¹²⁾ 또 이태호 등(2005)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접대비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접대비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접대비의 과다지출 가능성이 높으며, b_3 는 양(+)¹³⁾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매출액 성장성(*ΔSALE*)을 포함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접대비의 생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며(윤태화 등 2006), 따라서 b_4 의 계수는 양(+)¹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규모(*SIZE*)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이를 다양한 생략된 변수들(*correlated omitted variables*)의 대용치로 간주하기 때문에(Becker et al. 1998) 포함하였다. 사전적으로 기업규모가 접대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¹³⁾ 또 부채비율(*LEVE*)을 통제변수에 포함시킨 이유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위험이 증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접대비를 포함하는 기업비용의 지출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이러한 재무위험이 접대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전기 재고자산 증감률(*INVC*)을 모형식에 포함한 이유는 전기로부터 재고가 누적된 기업일수록

매출 확대를 위해 당기에 접대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b_7 은 양(+)¹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영업현금흐름(*CFO*)과 당기손실발생여부(*LOSS*)를 모형식에서 통제한 이유는 영업현금흐름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며, 당기손실발생여부는 기업위험을 나타내는 측정치로서 수익성과 위험 요인이 접대비지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¹⁴⁾ 구체적으로, 영업현금흐름이 커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접대비지출을 증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므로 b_8 의 값은 음(-)으로 예상된다. 또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접대비지출을 늘려서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므로 b_9 는 양(+)¹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밖에도 본 연구는 소유구조 관련변수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는데, 소유구조는 기업 전반의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선행연구에서처럼 대주주 지분율(*LARGE*)과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EN*)을 소유구조 관련변수로 사용하였다. 윤태화 등(2006)은 대주주 지분율이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만약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접대비를 과다 지출한다면 대주주 지분율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사이에는 양(+)¹⁴⁾의 관련성이 예상되는 반면,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여 지배주주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접대비지출을 억제한다면 음(-)¹⁴⁾의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도초

12) 법인세법 제25조 1항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의 기준금액은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3) 윤태화 등(2006)은 접대비 및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에서, 접대비와 기부금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담하는 정치적 비용이 커질 수 있어 이로 인한 접대비 및 기부금의 지출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 견해를 따르면 b_3 는 양(+)¹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14) 유희경 등(2006)은 관광호텔산업을 대상으로 접대비생산성(접대비 1원당 매출액)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호텔기업의 현금흐름과 접대비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과기업의 경우 b_{10} 의 회귀계수 값의 부호는 양(+)과 음(-)의 예상이 모두 가능하다. 또 홍정화와 이태호(2004) 및 이태호 등(2005)의 연구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접대비당 매출액 즉, 접대비 생산성이 높음을 실증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잘 통제되어 접대비지출을 억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b_{11} 은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4.3 표본기간 및 표본기업의 선정

법인세율의 인하는 1990년 이후 여러 번 시행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화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자료수집도 1999년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기간을 1999년 이후 세율인하가 시행된 기간인 2002년도와 2005년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 포함된 연도는 2001년과 2002년, 그리고 2004년과 2005년이다. 다만, 식(8)의 종속변수가 접대비 변동(ΔEE) 변수이므로 실제로 분석에 이용된 표본기간은 2002년도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3개 연도이며, 2005년도의 경우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개 연도가 된다.¹⁵⁾ 한편,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

하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
- (2) 12월 결산법인
- (3)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II에서 필요한 재무자료가 수집 가능한 기업
- (4)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에서 연구목적상 필요한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및 접대비 한도초과여부에 대한 기업별 자료가 수집 가능한 기업

조건 (1)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이유는 재무제표의 양식,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일반 제조업과 상이하기 때문이며, 조건 (2)는 표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된 사항이다. 조건 (3)과 (4)는 자료원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관련된 조건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될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 II에서 추출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을 구분하여 실증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표본기업이 접대비 한도초과기업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에서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을 통해 수작업으로 수집되었다.¹⁶⁾ 즉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전체 거래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구분이 가능한 기업들을 우선

15) 다만, 식(8)에서 변수의 특성상 재고자산의 변동액($INVC_t$)은 전기 자료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1999년 자료도 분석에 이용되었다.

16)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법상 접대비한도 산식을 계산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로 인한 오분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본기업의 오분류 문제를 극복하고자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사항에서 법인세비용의 보고 사항 중 '당기와 전기 중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내역'에 보고된 영구적 차이 자료를 이용하여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보고한 기업이면 한도초과기업으로 분류하고, 영구적 차이란에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이 보고되지 않은 기업이면 한도미달기업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한도미달기업의 경우에 한도초과기업과 달리 영구적 차이를 보고할 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제시하지 않고 간략히 총액만을 보고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자료상 누락으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극단치 처리의 자의성을 배제하고자 식(8)의 회귀모형식을 통해 계산된 Studentized Residual이 ±2를 벗어난 관찰치를 극단치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서 분석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대비 한도초과기업은 1,146개 기업-연 자료이고, 한도미달기업은 293개 기업-연 자료이다. 구체적으로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2001년 및 2002년의 표본은

558개, 2004년 및 2005년의 표본은 588개 기업-연 자료이고,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2001년 및 2002년의 표본은 144개, 2004년 및 2005년의 표본은 149개 기업-연 자료이다.

식(8)의 모형식을 통해 분석될 최종표본의 산업별 분포를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으로 나누어 각각 <표 2>에 제시하였다. 산업에 속한 업종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SMAT의 산업분류기

<표 2>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

업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음·식료품	63	5.5	26	8.9
필프, 종이 및 종이제품	46	4.0	3	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294	25.7	45	15.4
비금속광물제품	132	11.5	43	14.7
제1차금속산업	84	7.3	25	8.5
기타기계 및 장비 등	98	8.6	15	5.1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등	119	10.4	17	5.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7	1.5	3	1.0
기타운송장비 등	54	4.7	32	10.9
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	118	10.3	42	14.3
전기, 가스 및 증기업	23	2.0	14	4.8
수상운송업 등	35	3.1	12	4.1
통신업	3	0.3	6	2.0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22	1.9	1	0.3
가구 및 기타제품 등	38	3.3	9	3.1
총계	1,146	100.0	293	100.0

주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에는 코르크, 석유정제제품 및 핵연료, 섬유제품(봉제의복 제외), 화학물 및 화학제품이 포함되며,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는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이 포함,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등에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가 포함, 기타운송장비 등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포함된다. 수상운송업 등에는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항공운송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는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이, 가구 및 기타제품 등에는 가죽, 가방 및 신발, 금속광업, 담배, 석탄, 원유 및 우라늄광업, 어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이 각 산업에 속한다.

주2) 표본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모두 2001년 및 2002년과 2004년 및 2005년도 자료가 통합되어 보고됨.

준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중분류 기준을 따랐다. <표 2>에서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표본 중 한도미달기업이 한도초과기업보다 표본수는 작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표본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검증결과가 특정 산업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에는 최종표본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으로 구분한 후 연도별 접대비 금액, 접대비 변동률, 매출액, 매출액 변동률 및 매출액 대비 접대비의 평균을 각각 보고하였다. 먼저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접대비지출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4년 대비 2005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접대비 변동률은 세울인하 직전연도(2001년 및 2004년)보다 세울인하연도(2002년 및 2005년)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한편 매출액 수준과 변동은 2002년에는 전기에 비해 증가현상을 보이거나, 2005년에는 전기에 비해 수준과 변동 모두 감소현상을 보인다. 이는 세울인하가 컸던 2005년도에서는 매출액 수준과 변동이 전기에 비해 감소하더라도 한도초과기업의 접대비 수준과 변동은 더 증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지출은 2001년 대비 2002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 대비 2005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한도초과기업과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 변동률에 있어서는 두 세울인하 기간 모두 한도초과기업과 같이 증가현상을 보인다. 한도미달기업의 매출액 수준과 변동은 한도초과기업의 경우와 유사하나, 매출액 변동은 한도초과기업과 비교하여 세울인하가 컸던 기간에는 일치된 패턴을 보이며, 세울인하가 작았던 기간에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한편, 매출액 대비 접대비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연도별로 상반된 패턴을 보이며, 또한 한도초과기업은 세울인하가 컸던 2005년에 전기보다 더 증가되었으나, 한도미달기업은 반대로 더 감소되었다.

<표 3>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연도별 접대비 및 매출액

구분 연도	한도초과기업(N=1,146)				한도미달기업(N=293)			
	2001	2002	2004	2005	2001	2002	2004	2005
접대비	483,234	485,658	502,497	612,353	518,117	741,804	674,326	592,173
접대비 변동률	0.024	0.223	-0.051	0.144	0.049	0.068	-0.084	0.106
매출액	353,677,451	375,069,610	532,268,021	458,630,308	1,546,736,032	1,592,191,830	1,781,435,490	1,491,863,685
매출액 변동률	0.025	0.124	0.132	0.095	0.068	-0.040	0.164	0.033
매출액대비접대비	0.0028	0.0025	0.0023	0.0025	0.0008	0.0013	0.0010	0.0008
표본수	278	280	296	292	70	74	68	81

주) 접대비와 매출액은 금액으로 단위가 천원임.

V. 실증분석 및 결과

5.1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식(8)의 모형식에 이용될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치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보고된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치는 평균과 중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으로 나누어 수치를 보고한 후 두 집단 간 각 변수들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를 보고하였

다. 평균은 t-검증을, 중위수에 대해서는 Wilcoxon 부호순위합검증이 이용되었다.

<표 4>를 보면, 적대비 변동(ΔEE)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083(0.021)과 0.039(-0.002)로서 평균이 중위수에 비해 큰 값을 가지지만, 두 집단 간에 평균과 중위수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YD 변수는 한도초과기업의 평균이 0.499이고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은 0.529이다. YD 변수는 세율인하연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므로, 결국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세율인하연도의 표본이

<표 4> 기초통계량

변수	한도초과기업(N=1,146)		한도미달기업(N=293)		차이검증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t 값	Z 값
ΔEE_t	0.083	0.021	0.039	-0.002	1.142	1.425
YD_t	0.499	0.000	0.529	1.000	0.913	1.913
CHA_t	0.193	0.000	0.256	0.000	2.217**	2.349***
SL_t	0.383	0.000	0.253	0.000	4.469***	4.161***
$ASALE_t$	0.095	0.055	0.053	0.043	1.742*	1.065
$SIZE_t$	19.069	18.947	19.757	19.506	6.619***	6.295***
$LEVE_t$	0.459	0.450	0.537	0.548	5.744***	5.972***
$INVC_t$	0.178	0.050	0.106	0.032	1.400	0.706
CFO_t	0.061	0.061	0.072	0.064	1.763*	1.497
$LOSS_t$	0.185	0.000	0.171	0.000	0.578	0.568
$LARGE_t$	0.352	0.347	0.323	0.329	2.395**	2.494***
$FOREN_t$	0.082	0.009	0.111	0.020	2.694***	2.033**

주1) 변수의 정의: $\Delta EE_t = t$ 년도 적대비 변동($=$ (적대비지출액 $_t$ -적대비지출액 $_{t-1}$)/적대비지출액 $_{t-1}$), $YD_t =$ 법인세율 인하연도(2002년 및 2005년)이면 1, 세율인하 적전연도(2001년 및 2004년)이면 0, $CHA_t = t$ 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1, 아니면 0, $SL_t = t$ 년도 중소기업에 속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 $ASALE_t = t$ 년도 매출액 성장성($=$ (매출액 $_t$ -매출액 $_{t-1}$)/매출액 $_{t-1}$), $SIZE_t = t$ 년도 기업규모(기초총자산에 자연로그 값), $LEVE_t = t$ 년도 부채비율($=$ 총부채/총자산), $INVC_t = t$ 년도 전기 재고자산 증감률($=$ (재고자산 $_t$ -재고자산 $_{t-1}$)/재고자산 $_{t-1}$), $CFO_t = t$ 년도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LOSS_t = t$ 년도 당기 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LARGE_t = t$ 년도 대주주 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 $FOREN_t = t$ 년도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임.

주2) 평균은 t-검증(t-값)을, 중위수는 Wilcoxon부호순위합검증(Z-값)을 대상으로 함.

주3) 표본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모두 2001년 및 2002년과 2004년 및 2005년도 자료가 통합되어 보고됨.

전체 중 49.9%이며,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세을 인하연도 표본이 전체 중 52.9%임을 알 수 있다. 재벌여부(*CHA*)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이 각각 0.193과 0.256으로, 두 집단 간에 평균과 중위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도미달기업이 한도초과기업에 비해 재벌기업에 속한 계열회사의 비중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중소기업여부(*SL*)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이 각각 0.383과 0.253으로 두 집단 간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매출액 성장성(*ΔSALE*)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이 각각 0.095와 0.053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 별다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규모(*SIZE*)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19.069(18.947)와 19.757(19.506)로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기업규모가 더 작으며,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 부채비율(*LEVE*)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459(0.450)와 0.537(0.548)로 한도초과기업의 부채비율이 한도미달기업보다 유의하게 더 낮은 수준이다. 즉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 증감율(*INVC*)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178(0.050)과 0.106(0.032)으로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평균 재고자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CFO*)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061(0.061)과 0.072(0.064)로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영업현금흐름이 더 작게 나타났다. 손실발생여부(*LOSS*)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이 각각 18.5%와 17.1%로 두 집단 모두 손실발생기업이 20%

이내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 지분율(*LARGE*)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352(0.347)와 0.323(0.329)로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대주주 지분율이 유의하게 높으며, 외국인 지분율(*FOREN*)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082(0.009)와 0.111(0.020)로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에 비해 외국인 지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식(8)에 대한 주요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결과는 <표 5>에 보고하였다. <표 5>에서 대각선 상단은 한도초과기업 표본의 상관관계 결과를, 대각선 하단은 한도미달기업 표본의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표 5>를 보면, 한도초과기업에서 종속변수인 ΔEE 와 유의한 상관계수 값을 보이는 변수로는 *YD*, *ΔSALES*, *CFO*, *LOSS*로 나타났고, 한도미달기업에서 ΔEE 는 *CHA*, *SL*, *ΔSALES*, *SIZE*, *LEVE*와 유의한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ΔEE 는 *YD*, *ΔSALES*, *CFO*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LOSS*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ΔEE 는 *CHA*, *ΔSALES*, *SIZE*, *LEVE*와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SL*과 음(-)의 상관계수를 가진다. 이는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세을인하연도에,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영업현금흐름이 클수록 접대비지출이 더 증가하는데 반해, 손실발생기업의 경우 접대비지출이 더 감소한다는 결과이다. 한편,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재벌계열에 속한 기업인 경우,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접대비지

〈표 5〉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결과

변수	ΔEE_t	YD_t	CHA_t	SL_t	$\Delta SALE_t$	$SIZE_t$	$LEVE_t$	$INVC_t$	CFO_t	$LOSS_t$	$LARGE_t$	$FOREN_t$
ΔEE_t	1	0.129 (0.000)	-0.033 (0.260)	-0.005 (0.873)	0.763 (0.000)	-0.032 (0.274)	-0.001 (0.965)	0.006 (0.834)	0.073 (0.014)	-0.060 (0.043)	-0.014 (0.639)	-0.008 (0.800)
YD_t	0.095 (0.105)	1	-0.008 (0.787)	0.003 (0.915)	0.025 (0.395)	-0.005 (0.871)	-0.045 (0.124)	0.014 (0.641)	-0.029 (0.321)	-0.040 (0.180)	-0.113 (0.000)	0.014 (0.631)
CHA_t	0.143 (0.014)	-0.042 (0.475)	1	-0.377 (0.000)	0.014 (0.632)	0.555 (0.000)	0.195 (0.000)	-0.005 (0.870)	0.086 (0.003)	-0.017 (0.555)	0.093 (0.002)	0.157 (0.000)
SL_t	-0.110 (0.060)	0.013 (0.819)	-0.341 (0.000)	1	-0.026 (0.388)	-0.616 (0.000)	-0.101 (0.001)	-0.026 (0.373)	-0.162 (0.000)	0.179 (0.000)	-0.041 (0.169)	-0.203 (0.000)
$\Delta SALE_t$	0.380 (0.000)	-0.209 (0.000)	0.098 (0.092)	-0.048 (0.416)	1	-0.036 (0.218)	0.009 (0.763)	0.011 (0.723)	0.060 (0.044)	-0.092 (0.002)	0.026 (0.376)	0.004 (0.879)
$SIZE_t$	0.147 (0.012)	-0.019 (0.747)	0.543 (0.000)	-0.563 (0.000)	0.092 (0.118)	1	0.174 (0.000)	0.042 (0.157)	0.160 (0.000)	-0.097 (0.001)	-0.039 (0.187)	0.398 (0.000)
$LEVE_t$	0.133 (0.023)	-0.076 (0.195)	0.030 (0.613)	-0.235 (0.000)	0.079 (0.176)	0.208 (0.000)	1	-0.016 (0.600)	-0.111 (0.000)	0.279 (0.000)	-0.175 (0.000)	-0.196 (0.000)
$INVC_t$	0.048 (0.412)	-0.141 (0.016)	0.027 (0.645)	0.026 (0.663)	0.145 (0.013)	0.070 (0.229)	-0.008 (0.888)	1	0.000 (0.989)	-0.015 (0.601)	0.014 (0.625)	0.027 (0.363)
CFO_t	0.048 (0.411)	0.085 (0.148)	0.174 (0.003)	-0.135 (0.021)	0.290 (0.000)	0.207 (0.000)	-0.047 (0.424)	-0.082 (0.164)	1	-0.267 (0.000)	0.022 (0.467)	0.221 (0.000)
$LOSS_t$	-0.032 (0.588)	-0.026 (0.653)	-0.141 (0.015)	0.112 (0.055)	-0.208 (0.000)	-0.140 (0.016)	0.319 (0.000)	-0.009 (0.879)	-0.222 (0.000)	1	-0.086 (0.004)	-0.164 (0.000)
$LARGE_t$	-0.066 (0.261)	0.003 (0.964)	-0.005 (0.933)	0.070 (0.235)	0.020 (0.731)	-0.237 (0.000)	-0.114 (0.052)	-0.025 (0.673)	-0.059 (0.314)	-0.162 (0.005)	1	0.029 (0.319)
$FOREN_t$	0.058 (0.324)	0.002 (0.977)	0.430 (0.000)	-0.280 (0.000)	0.081 (0.166)	0.513 (0.000)	-0.139 (0.017)	0.021 (0.723)	0.223 (0.000)	-0.168 (0.004)	-0.114 (0.050)	1

주1)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로 대각선 상단은 집대비 한도초과기업(N=1,149)이고, 대각선 하단은 집대비 한도미달기업(N=293)임.

주2) 표본은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모두 2001년 및 2002년과 2004년 및 2005년도 자료를 포함되어 보고됨.

주3) 변수 정의는 〈표 4〉의 하단과 같음.

주4) 괄호안의 값은 p-값을 나타냄(양측검증).

출이 더 증가하며, 중소기업인 경우는 접대비지출이 감소한다는 결과이다.

한도초과기업이나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모두 SIZE는 CHA 및 SL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¹⁷⁾ 즉 재벌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크며, 중소기업일수록 기업규모가 작다는 결과이다. 한편,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모두 모형설정상에 종속변수인 ΔEE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이 있으나, 이들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도 상호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에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이들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는 이들 통제변수도 모형식에 포함한 후 분석을 실시한다.

5.2 접대비 변동의 단변량 차이검증결과

본 절에서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각각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접대비 변동(ΔEE)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먼저 <표 6>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된 연도인 2002년과 2005년을 통합하고, 그 직전 연도인 2001년과 2004년을 통

합하여 각각 '세율인하기간' 및 그 '직전기간'으로 명명한 후, 기간 간 접대비 변동(ΔEE)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과 중위수에 대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세율인하기간에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에 대한 ΔEE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181(0.081)과 0.088(0.030)이며, 직전기간에는 ΔEE의 평균(중위수)이 각각 -0.015(-0.055)와 -0.016(-0.065)로서,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직전기간에 비해 세율인하기간에서 접대비 변동의 평균과 중위수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 변동은 세율인하기간과 직전기간 사이에 평균은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중위수는 세율인하기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보인다.

지면관계상 <표 6>에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의 집단 간 접대비 변동(ΔEE)의 차이검증을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세율인하기간의 경우 두 집단 간의 t 값은 1.653이고, Z 값은 1.885로 모두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세율인하기간에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보다 접대비를

<표 6> 세율인하연도와 직전연도 간의 접대비 변동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구 분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평 균	중위수	평 균	중위수
세율인하기간	2002, 2005	0.181	0.081	0.088	0.030
직전기간	2001, 2004	-0.015	-0.055	-0.016	-0.065
세율인하기간과 직전기간의 차이검증		t 값=4.400***	Z 값=8.533***	t 값=1.611	Z 값=3.248***

주1) 평균은 t-검증(t-값)을, 중위수는 Wilcoxon부호순위합검증(Z-값)을 대상으로 함.

주2) 차이검증은 세율인하기간과 직전기간을 대상으로 함.

17) 변수간 다중공선성의 논의는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한다.

더 많이 사용함을 말해준다. 반면, 직전기간에 대한 두 집단 간 차이검증결과를 보면, t 값이 0.031이고, Z 값이 0.561로서 두 집단의 접대비지출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한도미달기업 보다는 한도초과기업이 세율인하기간에서 접대비지출을 더 증가시키는 유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5.3 회귀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분석모형 식(8)을 이용하여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로 보고하였다. <표 7>의 패널 A는 세율인하기간과 직전기간의 표본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패널 B와 C는 세율인하기간을 2002년과 200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¹⁸⁾ 한편, 산업더미변수 (ΣIND)가 회귀모형식에 포함되어 분석되었지만, 관련 결과는 지면관계상 보고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표 7>의 실증결과는 산업별 차이가 통제된 후의 결과다. 먼저 <표 7>의 회귀분석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F -값을 보이고 있어서 연구모형의 설정이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다. 모형의 설명력 (R^2)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한도초과기업이 한도미달기업보다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즉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패널 A부터 C까지 설명력이 각각 59.4%, 82.7%, 9.6%인데 반해, 한도미달기업은 각각 18.4%, 16.8%, 23.1%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주된 관심변수인 YD 의 회귀계수는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패널 A부터 C까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다.²⁰⁾ 이러한 결과는 한도초과기업이 2002년과 2005년 세율이 인하될 때 직전연도에 비해 접대비지출을 더 증가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다. 반면, 한도미달기업의 YD 계수는 패널 A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으로써 가설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만, 연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패널 B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2002년도에는 세율이 인하되어도 접대비지출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음으로써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2005년 세율인하 시에는 한도초과기업들처럼 접대비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설과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한도미달기업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한도미달기업에 대한 2005년도의 실증결과는 기업사결정의 전략적 측면을 감안하면 설명이 가능하다. 즉 2005년도 세율이 인하될 때 한도초과기

18) 본 연구에서 2002년도는 분석시 2001년과 2002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된 결과이고, 2005년도는 분석시 2004년과 2005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분석된 결과이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상 이를 2002년과 2005년으로 표시한다.

19) 표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명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VIF (variance influence factor) 값으로 조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을 상회하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7>에서 패널 A의 경우 한도초과기업은 설명변수 중 VIF 값이 가장 높은 변수가 $SIZE$ 로 2.742의 값으로 나타났고,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도 $SIZE$ 로 2.739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설명변수간 VIF 최대값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본 연구모형식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모든 분석에서도 VIF 값을 체크해 보았지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한다.

20) <표 5>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변수간 상관계수가 높았던 $SIZE$, CHA 및 SL 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추가로 다음 모형식을 이용하여 $SIZE$ 변수를 통제한 후 식(8)을 재분석해 보았다: $SIZE = a_0 + b_1CHA + b_2SL + e$. 즉, 이 모형식의 회귀분석 후 얻어진 잔차(e)를 $SIZE$ 변수의 대용치로 사용하여 식(8)을 재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표 7>과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검증결과가 다중공선성 문제에 민감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7〉 법인세율 인하여부와 접대비 변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변수	종속변수: 접대비 증감율(ΔEE_t)					
	패널 A: 2002 및 2005		패널 B: 2002		패널 C: 2005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절편	-0.507 (-1.315)	-0.597 (-1.016)	-0.268 (-0.596)	-0.522 (-1.023)	-0.203 (-0.362)	-0.812 (-0.771)
YD_t	0.168 (5.767***)	0.232 (3.792***)	0.080 (2.340**)	0.085 (1.618)	0.229 (5.480***)	0.349 (3.212***)
CHA_t	-0.112 (-2.428***)	0.112 (1.319)	-0.141 (-2.460***)	0.006 (0.075)	-0.018 (-0.293)	0.079 (0.532)
SL_t	0.018 (0.462)	-0.000 (-0.005)	0.077 (1.638*)	-0.058 (-0.782)	-0.004 (-0.079)	-0.007 (-0.043)
$\Delta SALE_t$	1.003 (40.054***)	0.895 (7.471***)	1.180 (50.556***)	0.481 (3.664***)	0.369 (6.580***)	1.212 (6.318***)
$SIZE_t$	0.019 (0.986)	0.024 (0.829)	0.013 (0.586)	0.019 (0.778)	-0.005 (-0.188)	0.032 (0.595)
$LEVE_t$	-0.050 (-0.573)	0.170 (0.954)	-0.050 (-0.492)	-0.048 (-0.344)	0.141 (1.109)	0.458 (1.221)
$INVC_t$	-0.001 (-0.103)	0.018 (0.257)	-0.018 (-0.810)	0.089 (1.727*)	0.002 (0.217)	-0.196 (-1.324)
CFO_t	0.360 (2.112**)	-0.588 (-1.669*)	0.098 (0.455)	0.154 (0.555)	0.249 (1.062)	-1.588 (-2.210**)
$LOSS_t$	0.056 (1.352)	0.037 (0.388)	-0.020 (-0.403)	0.049 (0.667)	0.021 (0.351)	0.089 (0.433)
$LARGE_t$	-0.076 (-0.920)	-0.167 (-0.969)	-0.080 (-0.830)	0.216 (1.571)	0.217 (1.735*)	-0.428 (-1.278)
$FOREN_t$	-0.129 (-1.120)	-0.033 (-0.141)	-0.111 (-0.686)	0.467 (1.937**)	0.062 (0.411)	-0.003 (-0.007)
ΣIN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70.855***	3.745***	111.680***	2.202***	3.583***	3.016***
수정된 R^2	0.594	0.184	0.827	0.168	0.096	0.231
표본수	1,146	293	558	144	588	149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4〉을 참조.

주2) 2002년도는 분석시 2001년과 2002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될 결과이고, 2005년도는 분석시 2004년과 2005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분석된 결과이다. 편의상 이를 2002년과 2005년으로 표시함.

주3) 괄호 속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주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업들이 접대비지출을 늘렸는데, 이는 한도초과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지배능력을 상승시켰을 것이다. 많은 한도미달기업들은 한도초과기업들과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한도미달기업들도 접대비지출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한도미달기업이 접대비지출을 늘렸다면, 이는 조세유인(tax incentives)으로 촉발된 한도초과기업들의 접대비 증가가 비조세 유인(non-tax incentives), 즉 경쟁으로 인한 한도미달기업들의 접대비 증가를 유발한 셈이 되어 매우 흥미롭다. 2002년도에는 한도미달기업들이 접대비지출을 늘리지 않았으므로 위 외부효과 설명이 불완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 세율인하가 1.1%p로서 2005년도 세율인하인 2.2%p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므로 한도초과기업의 접대비지출 증가액이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지출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²¹⁾

기타 통제변수의 결과를 보면, 패널 A부터 C까지 접대비 변동(ΔEE)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통제변수로는 재벌기업여부(CHA), 중소기업여부(SL), 매출액 성장성($\Delta SALE$), 영업현금흐름(CFO), 대주주 지분율($LARGE$) 및 외국인 지분율($FOREN$)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HA 의 회귀계수는 패널 A와 B에서 유의한 음(-)의 값이 나타났다. 이는 2002년도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재벌계열에 속한 기업이 접대비지출을 축소하였음을 말해준다. 이 결과는 재벌 소속 한도초과기업이 경제·사회적인 규제에 의해 또는 외부주주를 위한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접대비지출을 상대적으로 억제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SL 의 회귀계수는 패널 B의 한도초과기업에서만 ΔEE 와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이 결과는 중소기업의 접대비가 대기업에 비해 관련 규제비용 등이 더 낮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Delta SALE$ 의 회귀계수는 패널 A부터 C까지 한도초과기업이나 한도미달기업 모두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접대비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INVC$ 의 계수는 예상과는 달리 패널 B의 한도미달기업에서만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이는 전기 재고자산의 누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접대비지출의 증가현상이 2002년 한도미달기업에 국한됨을 의미한다. CFO 의 계수는 패널 A의 한도초과기업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나 패널 A와 C의 한도미달기업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이 관찰되었다. 이는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영업현금흐름이 더 클수록 접대비지출의 증가도 크지만,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영업현금흐름이 적은 기업이 접대비지출을 더 늘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도초과 여부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결과이다.

소유구조 관련 변수 중 $LARGE$ 의 회귀계수는 패널 C의 한도초과기업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인다. 이는 2005년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접대비지출이 더 늘어난 결과로서, 기업이 대주주나 경영자의 사적편의를 위하여 접대비를 과다 지출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가설과 일치한다.²²⁾ $FOREN$ 의 경

21) 사실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지만, 2002년 한도미달기업의 YD 계수부호는 양(+)의 값을 보이므로, 개별 한도미달기업에 따라서는 2002년도에 접대비지출을 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 윤택화 등(2006)의 연구는 대주주 지분율과 접대비 손금산입액 간에 t 값이 1.500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양(+)의 값을 보고한 바 있다.

우 패널 A에서는 한도초과 및 한도미달기업 모두 유의하지는 않지만 예상대로 회귀계수는 음(-)의 값이 나타나 외국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도덕적 해이가 통제될 수 있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널 B의 한도미달기업에서는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났다.

5.4 추가분석

〈표 7〉의 검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 중 접대비 변동(ΔEE)과 일관성 있게 유의적인 결과를 보인 변수가 매출액 성장성($\Delta SALE$)이었다. 즉, $\Delta SALE$ 변수의 경우 한도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접대비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접대비 변동률이 더 높은 결과이므로, 서울인하 기간에 관찰된 한도초과기업의 접대비지출액 증가율이 매출액 성장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한편, 비교목적상 한도미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추가분석을 위해 아래 식(9)을 이용하였는데, 이 모형식이 식(8)과 다른 점은 매출액 성장성($\Delta SALE$)과 서울인하 기간여부(YD)와의 상호작용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begin{aligned} \Delta EE_t = & a_0 + b_1 YD_t + b_2 \Delta SALE_t + b_3 YD_t \\ & * \Delta SALE_t + b_4 CHA_t + b_5 SL_t \\ & + b_6 SIZE_t + b_7 LEVE_t + b_8 INVC_t \\ & + b_9 CFO_t + b_{10} LOSS_t + b_{11} LARGE_t \\ & + b_{12} FOREN_t + \Sigma IND + \varepsilon \quad \text{식(9)} \end{aligned}$$

식(9)의 회귀분석 결과는 주된 관심변수, 즉

YD , $\Delta SALE$ 및 $YD * \Delta SALE$ 에 대해서만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을 보면, YD 의 회귀계수는 〈표 7〉과 같이 패널 B의 한도미달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이, $\Delta SALE$ 의 회귀계수는 패널 C의 한도초과기업만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분석의 관심변수인 $YD * \Delta SALE$ 의 회귀계수는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패널 A부터 C까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서울인하 기간에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접대비지출이 더 많았던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과 2005년 각 연도별로도 매우 강하게 관찰됨으로써 서울인하 폭과도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도미달기업의 $YD * \Delta SALE$ 의 계수는 2002년과 2005년의 부호가 서로 상반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002년의 부호는 양(+)이므로, 한도미달기업의 접대비지출액 증가율은 매출액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더 높았지만, 2005년의 부호는 음(-)이어서 매출액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서 접대비 증가율이 더 높았다. 결국, 서울인하에 대응한 접대비의 사결정은 한도초과기업에서 더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5.5 민감도 분석

본 절에서는 접대비 변수의 측정과 관련하여 매출액대비접대비 변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이 분석의 목적은 다수의 선행 연구들(오기수 2002; 홍정화와 이태호 2004 등)이 매출액대비접대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선행연구와의 대비를 위함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가 변동변수(change variable)이므

〈표 8〉 법인세율 인하여부와 절대비 변동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매출액 성장성을 고려한 경우

구분 변수	종속변수: 절대비 증감율(ΔEE_t)					
	패널 A: 2002 및 2005		패널 B: 2002		패널 C: 2005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YD_t	0.109 (3.750***)	0.253 (4.140***)	0.067 (1.989**)	0.017 (0.410)	0.187 (4.125***)	0.397 (3.565***)
$\Delta SALE_t$	0.357 (4.508***)	1.085 (7.760***)	0.716 (7.432***)	0.235 (2.300**)	0.116 (0.960)	1.365 (6.499***)
$YD_t * \Delta SALE_t$	0.711 (8.569***)	-0.595 (-2.567***)	0.489 (4.956***)	0.906 (9.596***)	0.321 (2.371***)	-0.810 (-1.725*)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ΣIN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75.352***	3.934***	112.934***	7.414***	3.693***	3.059***
수정된 R^2	0.619	0.210	0.834	0.529	0.103	0.242
표본수	1,146	293	558	144	588	149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4〉을 참조.

주2) 2002년도는 분석시 2001년과 2002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된 결과이고, 2005년도는 분석시 2004년과 2005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분석된 결과이다. 편의상 이를 2002년과 2005년으로 표시함.

주3) 괄호 속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주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로, 매출액대비절대비도 변동변수로 측정된 후²³⁾ 이를 이용하여 식(8)을 재검증하였다.

〈표 9〉에 보고된 분석결과를 보면, 〈표 7〉에서 관찰된 바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옴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매출액대비절대비를 변동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한 분석에서도 본 연구의 가설이 일관되게 지지되는 결과를 얻었다.²⁴⁾

5.6 강건성 분석

지금까지의 분석에서는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표본을 구분하여 선정할 때에 당기의 한도초과 여부만을 고려하였다. 본 절에서는 당기뿐만 아니라 전기에서의 한도초과 여부까지 고려하여, 당기 및 전기 모두 한도초과된 기업과 한도미달된 기업만을 표본으로 하여 동일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²⁵⁾ 이

23) 본 연구에서 매출액대비절대비의 변동률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text{매출액대비절대비 변동률} = \frac{[(\text{절대비지출액}_t / \text{매출액}_t) - (\text{절대비지출액}_{t-1} / \text{매출액}_{t-1})] / (\text{절대비지출액}_{t-1} / \text{매출액}_{t-1})}{1}$$

24) 반면, 매출액대비절대비의 수준변수(level variable)를 이용하여 식(8)을 재검증한 결과에서는 〈표 7〉의 주된 관심변수 모두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계수값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절대비 금액이 매출액에 비해 극히 작은 값을 가지므로, 수준변수로는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절대비의 연도별 변화를 통계적으로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 당기 및 전기 한도초과 여부를 모두 고려하게 되면 표본수가 상당히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표 7〉의 한도초과기업은 1,146개이지만, 당기 및 전기 모두 한도초과인 기업의 표본은 1,012개로 134개가 줄어들며, 한도미달기업 표본은 293개에서 194개로 99개의 표본이 감소된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한도초과기업은 11.7%, 한도미달기업은 33.7%의 표본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표 9〉 법인세율 인하여부와 매출액대비접대비 변동률에 대한 추가분석결과

구분 변수	종속변수: 매출액대비접대비 증감율(ΔEE_t)					
	패널 A: 2002 및 2005		패널 B: 2002		패널 C: 2005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한도초과기업	한도미달기업
YD_t	0.106 (3.231 ^{***})	0.229 (3.855 ^{***})	0.086 (2.445 ^{**})	0.105 (1.447)	0.150 (2.679 ^{***})	0.312 (3.524 ^{***})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ΣIND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F-값	3.952 ^{***}	2.298 ^{***}	3.511 ^{***}	3.376 ^{***}	3.739 ^{***}	1.816 ^{***}
수정된 R^2	0.061	0.100	0.101	0.293	0.104	0.113
표본수	1,146	293	558	144	588	149

주1) 변수의 정의는 〈표 4〉를 참조. 다만, 종속변수는 매출액대비접대비 변동률로서

주2) 2002년도는 분석시 2001년과 2002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된 결과이고, 2005년도는 분석시 2004년과 2005년의 자료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분석된 결과이다. 편의상 이를 2002년과 2005년으로 표시함.

주3) 괄호 속의 수치는 각 설명변수별 회귀계수의 t-값임.

주4)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양측검증).

는 전술한 실증결과가 표본선정의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표본선정조건에 대한 실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결과를 별도의 표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조건으로 선정한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표본 모두에 대해, 그리고 통합분석과 연도별 분석 모두에 있어서도 〈표 7〉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 매출액 성장성이 세율인하와 접대비지출간의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새로운 표본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한도초과기업의 경우는 〈표 8〉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고,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패널 A와 패널 C에서 유의수준이 약화되는 현상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표본선정조건에 대해 강건성을 보이고 있다.

VI. 요약

본 연구는 기업이 최적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초과 여부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에 상이하게 대응함을 이론적 모형을 통해 보여주었다. 즉, 한도미달기업은 최적접대비지출액이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세율이 인하되어도 접대비지출에 변동이 없으나,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접대비지출액은 세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세율이 인하되면 접대비지출도 늘어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분석결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 등 두 유형의 기업에 대해 세율이 인하된 2002년 및 2005년과 그 직전연도인 2001년 및 2004년을 대상으로 접대비지출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도초과기업은 세율인하연도의 접

대비지출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더 증가하여 이론적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2002년의 접대비지출액은 2001년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론적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2005년의 접대비지출액은 2004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이론적 결과와는 상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당기 및 전기 모두 접대비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에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세율인하기간에 매출액 성장성이 높았던 기업이 접대비지출을 더 많이 늘린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과 2005년 각 연도별로도 매우 강하게 관찰됨으로써 세율인하의 크기와 상관성이 없었다. 반면, 한도미달기업의 경우는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2002년의 경우 한도미달기업은 매출액 성장성이 높았던 기업에서 접대비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2005년에는 오히려 매출액 성장성이 낮았던 기업에서 접대비증가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세율인하에 대응한 접대비 의사결정은 한도초과기업에서 더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한도미달기업의 경우 최적접대비가 세율과 중립적이지만, 한도초과기업의 최적접대비는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율이 인하될 때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접대비지출 유인이 한도초과기업과 한도미달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고, 또한 한도초과기업의 경우 세율인하에 따라 접대비지출액을 일관되게 증가시킨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접대비지출 증가액이 기업가치의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전제한다면 본 연구결과는 세율인하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 조세당

국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의 매출액 성장성에 따라 접대비증가액이 다르다는 실증결과는 접대비의 생산성(또는 한계수익)이 기업이나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률적인 접대비한도규제 보다는 접대비 생산성에 따라 한도규제 방법을 달리 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 이외에도, 본 연구는 기업의 접대비 관련 최적의사결정을 모형을 통해 엄밀히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이론적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을 갖는다.

이러한 유의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접대비 자료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이지만, 이는 외부연구자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는 보고된 접대비를 실증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접대비 관련 선행연구들은 보고된 접대비와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접대비가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손원익 1997; 오기수 2002). 따라서 보고된 접대비와 실제 지출된 접대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참고문헌

- 강형철·박경서·장하성, 2006. 한국 재벌기업집단의 그룹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무연구**(제19권 제1호): 187-230.
- 박기백·손원익, 2003. 접대비모형과 실증분석, **재정논집**(제18집 제1호): 137-152.

- 손원익, 1997.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17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손원익, 2003.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03-10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오기수, 2000. 접대비관련 세법개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무학연구**(제15권):
67-90.
- 오기수, 2001. 접대비 계산기준의 개정에 따른 조세공평
분석, **세무학연구**(제18권 제2호): 35-58.
- 오기수, 2002.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제19권 제1
호): 157-184.
- 유희경 · 김수정 · 이완중, 2006. 관광호텔의 특성, 접대비
생산성,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호텔
경영학연구**(제15권 제3호): 39-52.
- 윤태화 · 이영한 · 고윤성, 2006. 소유구조 및 사외이사 비
율이 영구적차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제23권 제2호): 9-35.
- 이태호 · 홍정화 · 박성배, 2005. 기업 접대비의 생산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제23권 제2호): 25-50.
- 정운오 · 박종일 · 박찬웅, 2007.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
정 강화에 대응한 기업의 세무전략, 미발표논문,
서울대학교.
- 최원욱 · 김갑순 · 이영한, 2005.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
한도초과지출액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
학연구**(제22권 제4호): 87-121.
- 홍정화 · 이태호, 2004.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접
대비 지출실태에 관한 비교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1권 제4호): 97-129.
- Becker, C., DeFond, M.,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
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The Effect of Tax Rate Changes on Corporate Spending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Woon-Oh Jung* · Chan-Woong Park** · Jong-Il Park***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model explaining how tax rate changes could affect corporate decisions on the spending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EE). This study further test empirically the theoretical results drawn from analyzing the model. In the theoretical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optimal EE of the firms for which its dollar amount falls below the deductible ceiling stipulated in the tax law(low-EE firms, henceforth) is determined independently of tax rates(in other words, the optimal EE of such firms is neutral to tax rates), but that the optimal EE of the firms for which its amount exceeds the ceiling (high-EE firms, henceforth) is dependent upon tax rates(that is, the optimal EE of such firms are not tax-neutral). In particular, a reduction in tax rate results in an increase in the optimal EE because a tax rate reduction lowers the tax disfavor of the EE that exceeds the deductible ceiling.

To empirically test these theoretical results, this study analyzes the EE of the years in which tax rates fell, 2002 and 2005, as compared to those of the prior years, 2001 and 2004 for both low-EE firms and high-EE firms. The major empirical results foun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 high-EE firms increase the EE in the years of tax rate reductions relative to the previous years. On the other hand, while in 2002 low-EE firms do not increase the EE relative to 2001, they increase the spending of the EE in 2005 relative to 2004. This study provides one potential reason for the low-EE firms' increase in the EE in 2005. When tax rates decline, it is optimal for high-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E firms to expand the spending of their EE because the tax cost of the EE declines (in particular, the tax cost of the EE in excess of the deductible ceiling). Expanding the EE would, in tur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heir market share. This means that the market share of low-EE firms in the same industry would decline. Because it would not be optimal for low-EE firms to acquiesce to a decline in their market share, they would have to increase the spending of the EE as their competitors do. If this is the case, an increase in the high-EE firms' spending of the EE triggered by tax rate reductions would give rise to an increase in low-EE firms' spending. While the 2005 increase in low-EE firms' spending could be explained by the competitive nature of the corporate decisions, the null effect in the 2002 cannot. However, it is likely that because the magnitude of the tax rate fall of 2005 is twice as large as that of 2002, high-EE firms' spending would be much greater in 2005 than in 2002. So the possibility may have been escalated in 2005 that high-EE firm's spending of more EE stimulates low-EE firms to mimic them.

The second major empirical result is that high-EE firms with higher sales growth rates tend to increase the EE spending to a greater extent in the years of tax rate reductions than those with low sales growth rates. This empirical phenomenon is clearly observed in each of the two years of tax rate reductions, seemingly independent of the magnitude of the tax rate reduction. In contrast, a similar phenomenon is not observed consistently for low-EE firms. In 2002, low-EE firms having high sales growth rates exhibit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EE to a greater extent, but on the contrary, firms with low sales growth rates show the tendency to increase the spending more in 2005. In sum, corporate decisions with respect to the optimal EE in response to tax rate reductions seem more consistent in the case of high-EE firms than in the case of low-EE firms. This supports indirectly the theoretical finding that the optimal EE of low-EE firms is neutral to tax rates, while the high-EE firms' optimal EE varies with tax rates.

In summary, this study has theoretically demonstrated that when tax rates fall, corporate incentives to adjust the optimal EE differ, depending on whether it is a high-EE or a low-EE firm. It has also empirically shown that the EE spending of high-EE firms rises as tax rates go down. To the extent that the rise of the EE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the value of the spending firms, this study has documented the effectiveness of such tax policies as decreases in tax rates. Further, this study also reports that an increase in the EE varies

with firms' sales growth rates, implying that the marginal revenue of the EE spending may also vary with firm and/or industry characteristics. It may thus be more desirable to adopt a policy of differing ways of determining the deductible ceiling of the EE in accordance with the productivity of the EE spending rather than the uniform policy we currently have. Besides such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EE-related literature in that it has rigorously modelled corporate decisions on the optimal EE spending, and thus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corporate decision making.

Key words: Entertainment Expenses, Ceiling for Entertainment Expense Deduction, Tax Rate Reduction, Tax Strategy